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방향에 대한 토론

강충열(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의원입법으로 영재교육진흥법이 1999년 12월 28일 의결되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제정에 이르기까지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소극적인 인상을 주웠다는 점이다. 교육이라는 활동에 관해서는 소위 '간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가 영재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을 주도해 가고 여론을 모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인상을 법제정과 관련해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다. 한마디로 영재교육에 대한 의견이 교육부 정부 당국보다 국회의원들에게 더 높았다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법효력이 발생하는 2000년 3월 1일 까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는데 교육부는 이전에 보였던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제가 시행령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토론에 앞서 과거 교육부의 소극적이었던 자세를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이유는 주제발표안에 영재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역할이 너무 축소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나라 영재들의 교육에 관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중앙영재교육위원회를 과학, 체육, 예술, 인문사회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관련 정부부처에 두자는 주제발표안이 그 단적인 예이다. 발표안대로 시행한다면 중앙영재교육위원회는 과기부와 문화체육부에 두어질 것이고, 혹시나 인문사회 분야는 교육부에 두어질 가능성 정도나 있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양자의 경우 모두, 교육부는 소위 '교육이라는 간판 사업'에 걸맞지 않게 영재교육에 관한한 그 핵심적 역할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런 안이 나오게 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교육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실망하여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한 원인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 느낌을 잠시 회고해 보았다.

시행령에 대한 주제발표안에 대한 토론의 입장에서 제 생각을 정리해 본다면, 우선 전반적으로 교육부의 역할을 중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영재교육도 그 근본 성격상 교육부의 간관적인 사업, 즉 교육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곧이어 교육부총리제가 도입되어 고급인력 육성과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 영재교육은 교육부의 그 핵심적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재교육진흥법은 주로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초·중등 교육에 관한 내용중의 한 부분이기도 하려니와, 그 교육적 실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 핵심적 역할에서 제외되면 영재교육은 그 실제에 있어 많은 난관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는 교육부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 1항 “교육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 둔다”는 법조문에 위배되기도 한다. 그리고 발표안대로 과학, 체육, 예술, 인문사회별로 관련 정부부처에 ‘영역별’ 중앙위원회(예: 과학중앙영재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교육부의 중앙위원회에는 영역별 중앙위원회에서 각각 3-4인씩 대표들이 참여하고 일반 영재교육관련인사 5-10인을 추가하여 총 20-30인으로 구성하고 국가수준에서 영재교육관련 사항을 각 영역별 위원회와 연계하며 총괄하도록 해야 ‘중구난방식 영재교육’을 억제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역별 중앙위원회에 영재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재정출연과 기관 운영에 자율성과 융통성을 가능한한 많이 부여함으로써 영역별로 특수한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도위원회의 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도 같은 맥락에서 시도중앙위원회와 영역별시도중앙위원회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제발표에서는 영재교육연구원도 각 부처별로 둘 것을 제안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재교육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연구역량이 집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연구원도 교육부 산하에 두되, 총괄적인 연구를 하는 일반영재교육연구부와 영역별 영재교육연구부 조직을 갖는 것이 연구에 효과적일 것이다. 주제발표안의 국립영재학교도 그 소속을 각 유관부처 산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있다. 국립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교육과정 및 입학, 졸업, 교사자격 등 여러 가지 관련 조항들이 우리나라 전체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의 체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부 산하에 둘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설립에 필요

한 재정 출연과 운영에 각 부처가 참여할 폭을 넓히면서 교육부는 이에 협조하는 체제로 나가야 교육부의 한정된 교육재정과 인력 문제를 극복하면서 영재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행령에서 깊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영재교육기관(국립영재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이수 및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것이다. 주제 발표안은 국립영재학교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재성의 조숙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영재들은 조기에 영재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조기에 그 영재성이 안내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립영재학교 교육은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립영재학교는 학교급별 개념이 아니라 무학년제 개별화교육체제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학생의 영재성이 문제가 되며, 그 영재성은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국립영재학교의 대학입학 전형은 이수한 교육과정의 내용과 업적 포트폴리오에 기초한 무시험 전형이어야 한다. 내신이나 수능에 의존하는 대학입학전형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영재교육기관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입시명문기관으로 변하는 우를 다시 범하게 된다. 시행령은 이런 과거 경험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영재교육담당교사의 자격에 관한 문제이다. 초중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은 자격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상담활동이나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해당 자격연수를 받고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다. 영재와 관련한 교육과정, 교수법, 생활지도 등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다. 이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이 영재교육 담당교사들에게 필요하다. 주제 발표안처럼 대학에 영재교육분야 석사과정과 영재교육자격 연수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양성대학에서는 영재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교사들이면 영재교육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들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